

인구청년정책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페이지
1	인구청년정책과	노동조합 설립신고	3일	92
2	인구청년정책과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3일	94
3	인구청년정책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15일	96
4	인구청년정책과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15일	99
5	인구청년정책과	직업소개사업 등 폐지신고	즉시	102

노동조합설립신고

사무내용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인구청년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5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1부 ○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업무처리 흐름도	○ 신고서 작성(노동조합)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인구청년정책과) ⇒ 처리결과 통보(인구청년정책과)			
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설립신고서 첨부서류 - 노동조합 결격사유 - 조직대상 중복 여부 -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 여부 			

노동조합 [] 설립 []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조합원 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소속사업장	소속부서 및 직책	
임원	직책	성명	주소
	직책	성명	주소

<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 관련 사항>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성명	주소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조합원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작성 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설립신고

년 월 일 본인 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설립	규약 1부	수수료 없음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사항(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 되었을 때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인구청년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5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3조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신고 사유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 1부 ○ 설립신고증 또는 구 변경신고증 원본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작성(노동조합)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인구청년정책과) ⇒ 처리결과 통보(인구청년정책과)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총회(대의원 회의) 회의록으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상의 총회, 대의원회의 적법 개최 여부 -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실시 여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노동조합 [] 설립 []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조합원 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소속사업장		소속부서 및 직책		
임원	직책	성명	주소		
	직책	성명	주소		

<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 관련 사항>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성명	주소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조합원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작성 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설립신고

 년 월 일 본인 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설립	규약 1부	수수료 없음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사무내용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자 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신청			상 단
민원처리부서	인구청년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접수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52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 소개사업에 한합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명부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계약서(전용면적 10㎡ 이상)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업무처리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결격사유, 신원조회 등/인구청년정책과) ⇒ 현장사무실 확인(인구청년정책과) ⇒ 보증보험가입 및 증권 제출(민원인) ⇒ 결과 통보(인구청년정책과)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0원(신규)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검토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 검토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결격사유(직업안정법 제38조) 조회 ○ 건축물 용도가 1종·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10㎡(법인은 33㎡)이상이어야 하며 단독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기번호 *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				
	사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직업상담원 *				
	사업소	동산	원		
	자산상황 *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				
	주 소개직종 * (한국표준직업 분류코드)	1)	()		
		2)	()		
		3)	()		
	겸업내용 *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비해당				
분 사무소	갯	수	지역		
등록기준지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p>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p>수수료</p> <p>신규(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한정한다) : 3만원</p>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p>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는 *란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사무내용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인구청년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52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업무처리 흐름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인구청년정책과) ⇒ 결과 통보(인구청년정책과)			
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검토 ○ 법인 등기 사항 검토 등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① 법인 또는 단체명		② 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③ 직업소개분야 대표자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소 소재지			
⑥-1 일반전화번호		⑥-2 휴대전화번호	
⑥-3 팩스번호		⑦ 직업상담원	
⑥-4 이메일주소			
⑧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⑨ 사무실전용면적			
⑩ 주 소개직종	1)	2)	3)
⑪ 사업소 종사자 수			
⑫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 여부	[] 해당(홈페이지주소 :) [] 비해당		
⑬ 등록기준지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유의사항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소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4. ⑦ 직업상담원란은 신고대상 무료직업소개사업소에 자격있는 직업상담원이 근무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5.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추고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만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의 ① ~ ⑩란 등 신고서의 작성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 등 폐지신고

사무내용	직업소개사업 등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인구청년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25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35조			
구비서류	○ 폐업신고서 ○ 허가증 · 등록증 · 신고필증 원본 ※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합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결과 통보(인구청년정책과)			
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 직업소개사업
[]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서
[] 근로자공급사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사업소	명칭			
	소재지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허가·등록·신고번호		허가·등록·신고일자	
폐업연월일		년	월	일

폐업사유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원본(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 ※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의 분실 등의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분실 등 사유]	없음

유의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자나 무료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